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7일 12시 32분



목차

목차	2
설립절차	3
설립절차	3
개인기업	3
법인기업	3

설립절차

창업을 하려면 먼저 기업형태를 결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인기업 또는 법인 기업을 설립해야 합니다.

👤 개인기업

개인기업으로 창업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.

- 사업자등록신청서(세무서에 비치)
- 주민등록등본
- 개별법에 의한 허가대상 업종은 사업허가증 사본

👤 법인기업

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자는 상법에 따라 해당서류를 구비하여 관할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,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.

- 법인등기(관할등기소)시 구비서류
 - > 정관작성(상호, 자본금 5천만원이상, 1주당 주식이격 등)
 - > 주주명부(이사 3인이상, 감사 1인 이상) 주주의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자산명세서, 주주출자확인서 등
- 법인설립신고 (관할세무서)시 구비서류
 - > 법인설립신고서
 - >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
 - > 개시 대차대조표,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

사업 인, 허가(개별법에 의한 인, 허가업종에 한함)
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시설명세서

사업자등록(개인) 세무서
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시설명세서

법인설립등기(관할지방 법원 또는 등기소)
신청서, 정관, 주식청약서, 주식인수증빙서류, 창립총회

법인설립신고(법안) : 세무서
신고서, 법인등기부, 정관, 개시대차대조표, 주주 및 출자명부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